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40호 2014. 5. 16.(금)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083호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_____ 2
- 사천시 조례 제108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7
- 사천시 조례 제1085호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_____ 14
- 사천시 조례 제1086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_____ 16
- 사천시 조례 제1087호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19
- 사천시 조례 제1088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4-424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6
- 사천시 공고 제2014-426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7
- 사천시 공고 제2014-427호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 사천시 공고 제2014-428호 사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9
- 사천시 공고 제2014-429호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0
- 사천시 공고 제2014-430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3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

사천시 조례 제1083호

조 례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향우회 회장
2.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애향심이 강한 국내외 인사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3)

3. 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4.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 ① 홍보대사의 관리 및 운영은 공보담당에게서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한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4)

제7조(지원 및 보상) 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40 호 (5)

제 호

위 축 패

주 소
성 명

귀하를 『항공우주산업도시, 해양수산관광도시』
사천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6)

홍보대사 위·해촉 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위촉일	해촉일	비고

※ A4횡으로 개서 사용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7)

사천시 조례 제10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하기에” 를 “하는데”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룩하여야” 를 “이루어야” 로 한다.

제7조제1항 “그 이외의” 를 “그 밖의” 로, “때에는” 을 “경우에는”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 를 “허락 없이”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8)

제9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본직기관장” 을 “본직기관의 장” 으로, “관하여는” 을 “관해서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하며,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을 “가 발생하면”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을 “가 발생하면” 으로, “파견근무자” 를 “파견근무하는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 규정」 (대통령령)” 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으로 하며,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을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로 한다.

제11조 중 “잔무처리상” 을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 그” 를 “근무 중”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을 “관해서는 「공무원증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호)”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의” 를 “에 따른” 으로 하고, “말하되” 를 “말하며” 로 하며, “산입하지” 를 “포함시키지” 로, “산입한다” 를 “포함시킨다” 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에 한하여” 를 “에만”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 를 “남은”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9)

제18조의2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으로 하고, 본문 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국외여행” 을 “국외여행이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 를 “계산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 을 “소속기관의 장” 으로, “잔여” 를 “남은” 으로, “기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차년도” 를 “다음 연도” 로, “에 한하여” 를 “에만”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월할계산에 의하여” 를 “월할 계산으로” 로,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병가중” 을 “병가 중” 으로, “병가일수는 이를” 을 “병가일수는”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입하지” 를 “포함시키지”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상으로 인하여” 를 “부상으로”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를 “에 걸린”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장은 소속직원” 을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으로 하고, “요하는” 을 “필요로 하는” 으로 한다.

제22조 중 “소속직원” 을 “소속공무원” 으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을 “필요한 기간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병역법” 을 “「병역법」 또는” 으로, “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0)

“에 관하여” 를 “로 인하여” 로, 같은 조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같은 조 제5호 중 “제47조에” 를 “제52조에” 로,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로,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차단” 을 “교통차단 또는” 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여자” 를 “여성” 으로,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여자” 를 각각 “여성” 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재학중인” 을 “재학 중인” 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의한” 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년마다 10일간(휴일제외)의 학습(안식)휴가를 1회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범위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1)

제28조 중 “에 관하여” 를 “에” 로 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2)

[별표 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23조제2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입 양	본인	20

비고 :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3)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4)

사천시 조례 제10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 사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사천시지부 와 그 산하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5)

1.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4.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제4조(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 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새마을기 계양) 시청사,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그 밖의 사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계양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 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6)

사천시 조례 제10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7)

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을 “란” 으로 하고 “자를” 을 각각 “사람을” 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초 선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본 인 :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2. 배우자 : 제2조제2항의 유족인 남편 또는 부인
3. 부 모 : 제2조제2항의 유족인 부 또는 모
4. 자 녀 : 제2조제2항의 유족인 자녀 (미망인이 재혼한 경우, 1세대 자녀) 중 1명

제4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에” 를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 로 하고,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8)

1.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2.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 및” 을 “명예수당 또는” 으로 하고,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하며, “및” 을 “또는”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률” 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제2호 라목 및 마목,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19)

사천시 조례 제10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0)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 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1)

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2)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3)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4)

사천시 조례 제10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를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종합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 를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으로 한다.

제2조 중 “복지회관” 을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 중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부변경시는” 을 “내부변경 시는”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5)

제7조제1항 중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나.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만료전에”를 “만료 전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6)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4 - 424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 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 으로 개정하여(안 제 16조)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7)

사천시 공고 제2014 - 426 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탁할 수 있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탁과 관련한 규정 및 서식 삭제(안 제7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8)

사천시 공고 제2014 - 427호

사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제9조, 10조)
-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독립세율을 규정함(안제11조)
- 다. 항공기 관련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함(안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69, 팩스 : 831-6027)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29)

사천시 공고 제2014 - 428호

사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제10조,제11조,제12조)

나.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9, 팩스 : 831-6027)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30)

사천시 공고 제2014 - 429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반영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31)

사천시 공고 제2014 - 430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이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 정비(안 제1조)
- 나.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
- 다.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규정 (안 제2조제2항)
- 라.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노력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3항)
- 마.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안 제3조~제4조)
- 바.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안 제5조)
- 사.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방법 (안 제6조)
- 아.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자. 징수포상금 지급시기(안 제9조)
- 차.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340호(32)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0, 팩스 : 831-6027)